

한국성서대학교 학칙

제정 : 1997. 03. 01.
 개정 : 2019. 01. 11.
 개정 : 2019. 03. 08.
 개정 : 2019. 05. 27.
 개정 : 2019. 09. 06.
 개정 : 2020. 01. 03.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04. 19.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01. 07.
 개정 : 2022. 02. 11.
 개정 : 2022. 05. 06.
 개정 : 2022. 12. 02.
 개정 : 2023. 02. 03.
 개정 : 2023. 03. 03.
 개정 : 2024. 01. 05.
 개정 : 2024. 04. 24.
 개정 : 2024. 06. 07.
 개정 : 2024. 06. 21.

담당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1조의2(교육 목적)	제1조의3(교육 목표)	제2조(학과)
제3조(전공, 학위 및 정원)	제4조(수업 및 재학연한)	제5조(학년·학기)	제6조(수업일수)
제7조(휴업일)	제7조의2(휴업일 변경)	제8조(교원의 교수시간)	제9조(입학의 허가)
제10조(입학의 시기)	제11조(입학자격)	제12조(입학지원서류)	제13조(자격 상실)
제14조(입학사정)	제14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15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제16조(입학절차)
제17조(보증인)	제18조(편입학 자격)	제18조의2(학사편입학)	제19조(재입학)
제20조(시행세칙)	제21조(등록)	제22조(제적)	제23조(수강신청)
제24조(휴학)	제25조(휴학기간)	제26조(직권 휴학 및 퇴학)	제27조(납입금 면제)
제28조(복학)	제29조(자퇴)	제30조(제적)	제31조(학사경고)
제32조(유급)	제33조(전공이수)	제34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제35조(전과)
제36조(전과 승인)	제36조의2(교직과정)	제37조(교육과정)	제38조(교과 이수단위 및 특별시험)
제39조(졸업)	제40조(졸업자격시험)	제41조(수업시간표)	제41조의2(수업방법)
제42조(학기당 취득학점)	제43조(수료)	제44조(학점인정)	제44조의2(석사과정 학점 취득)

제45조(학위)	제45조의2(부설 평생교육원 학위)	제45조의3(학위취소)	제46조(조기졸업)
제47조(시험)	제48조(출석)	제49조(성적평가)	제50조(재수강)
제51조(성적미달 제적)	제52조(학생활동)	제53조(학생지도)	제54조(비성서적 행위의 금지)
제55조(간행물)	제56조(징계)	제57조(재입학, 편입학 불허)	제58조(세부사항)
제59조(포상)	제60조(징계)	제61조(납입금)	제62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제63조(납입금 반환)	제64조(납입금 공시)	제64조의2(장애 학생 학점 등록)	제65조(장학금)
제66조(지급증지)	제67조(적제)	제68조(교수회)	제69조(심의사항)
제70조(교무위원회)	제71조(구성)	제72조(의장)	제72조의2(대학원위원회)
제72조의3(기능)	제72조의4(회의)	제73조(특별학생)	제74조
제75조(공개강좌)	제75조의2(시간제 등록생)	제75조의3(연구과정)	제76조(부속 · 부설기관)
제76조의2(산학협력단)	제77조(학칙 개정)	제78조(계약학과)	제86조(자체 평가)
제87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88조	제89조(심의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의 학사 및 일반 행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제1조의2(교육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 이념인 밀알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복음주의 교리를 고수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전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한다.(개정19.09.06)

제1조의3(교육 목표)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인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한다.(신설 19.09.06)

1. 말씀에 거하는 성서인 양성 : 성서의 진리에 입각하여 성서적 세계관을 함양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성서인 양성
2. 복음을 위한 전문인 양성 :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는 통섭적 사고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실천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양성
3.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 양성 : 공동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는 사회인 양성

제2조(학과) ① 본 대학교에는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간호학과와 시융합학부를 둔다.(일부개정15.02.06)(개정2024.04.24.)

② 본 대학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개정24.01.05)

제3조(전공, 학위 및 정원) ① 각 학과의 전공분야 편성 학위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04.12.1)(개

정09.05.08)(개정09.07.01)(개정09.11.20)(개정2010.11.09.)(개정2014.04.09.)(개정2017.03.22.)(개정2024.04.24.)(개정2024.06.21.)

계열	모집단위	전공	학위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열	성서학과	성서학	문학사	60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문학사	34
	영유아보육학과	영유아보육학	문학사	34
자연계열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사	45
공학계열	AI융합학부	인공지능	공학사	55
		AI휴먼서비스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 AI융합학부는 전공 선택시 입학정원 55명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100% 자율선택이 가능함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이하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한다. 각 대학원 별 과정, 전공분야 편성학위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04.12.1) (개정05.11.2) (개정06.4.12) (개정06.12.5) (개정07.3.7) (개정07.9.14)(개정08.2.27)(개정09.1.7) (개정09.7.8)(개정15.09.11)(개정16.08.05)(개정17.06.09.)(개정 19.08.02)(개정 22.01.07)(개정 24.01.05)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Th.M, M.A)	구약학, 신약학, 성경주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신학/문학) 석사	15
		간호학과 (M.S.N)	간호학	간호학 석사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신학과(Ph.D)	구약학, 신약학, 성경강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철학박사	5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M.Div)	목회학	목회학 석사	37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M.SW)	사례관리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 석사	7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영유아교육 학과	영유아교육학 (M. ED) ·장애영유아교육학(M. SED)	교육학 석사	17
총계					8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학연한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12. 06. 08)(개정17.06.09.)(개

정20.11.06.)(개정21.11.05)

1. 편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이미 지난 재학연한을 합산한다.(개정2012. 06. 08)(개정17.06.09.)
2.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2012. 06. 08)
3. 삭제(개정 15.02.06)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단,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둘 수 있으며, 계절 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제2학기의 시작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학기 별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38조의 교과이수 단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1.03.)

제7조(휴업일) 정기 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토요일, 일요일(주일)(개정15.02.06)
4. 국정공휴일

제7조의2(휴업일 변경) ① 임시 휴업 및 임시 휴업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8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다르게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04.12.1)

제4장 입학 (전.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9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제10조(입학의 시기) ①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개정19.01.11.)

② 재입학 및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편입학을 포함한 모든 전·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

다.(개정19.01.11.)

제11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앞의 제1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4.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 또는 세례예정자(개정19.01.11)

②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 또는 세례예정자(개정19.01.11)
2. 문학석사과정(M.A)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기독교상담학전공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신학석사과정(Th.M)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신학전공자는 M.Div.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07.09.14)

제12조(입학지원서류) ①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학교 성적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격 상실) 제1학년 입학 예정자가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을 못하면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입학사정) 신입생의 선발은 출신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필답고사,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헤아려 사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제14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15.04.03)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15.04.03)

제15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단,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개정19.01.11)

제16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기타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9.01.11)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21.04.19)

-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보증인) 삭제(개정19.01.11)

제18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 본 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직전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개정15.02.06)

제18조의2(학사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 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2%이내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이내에 한하여 입학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는 30%까지 가능하다.(개정19.01.11)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학 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2%이내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이내에 한하여 입학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는 30%까지 가능하다.(개정09.11.20)(개정19.01.11)

제20조(시행세칙) 신입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정하여 발표한다.

제5장 등 록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필함으로 완료된다.

제22조(제적) 삭제(19.01.11)

제23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개정 04.12.1)(개정15.02.06)

② 수강신청은 수강인원,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6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제24조(휴학)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계속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15.02.06)

제25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대학은 재학기간 중 3회를,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회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육아(임신, 출산),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04.12.1, 06.12.5)(일부개정15.02.06)

제26조(직권 휴학 및 퇴학) 삭제(개정15.02.06)

제27조(납입금 면제) 등록기일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된다.

② 삭제(개정15.02.06)

③ 삭제(개정15.02.06)

제29조(자퇴)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제7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장애학생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04.12.1)(일부개정15.02.06)(일부개정16.02.05)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단, 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삭제(개정19.01.11)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삭제(개정16.02.05)
6.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개정15.02.06)
8. 기타 제 규정에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설19.01.11)

제31조(학사경고) ①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불량을 경고한다.(개정15.02.06)(개정19.01.11)

② 재학기간 중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 처리한다.(개정16.02.05)

제32조(유급) ① 학년 또는 학기단위로 따로 정한 이수 요건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킬 수 있다.(개정19.01.11)

② 삭제(개정19.01.11)

③ 연속 2회 유급 시 제적한다. (개정16.08.05)

제7장 전공이수 및 교직과정

제33조(전공이수)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04.12.1)(개정15.02.06)(개정18.02.09)

1. (삭제24.06.07.)
2.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개정19.01.11)
3.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 이외의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2분의 1 이하 이수하는 것(개정19.01.11)
4. 융합모듈 : 학생의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 이중전공·복수전공·부전공 이외에 일련의 교육 목적과 내용을 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개정20.01.03.)
5. 나노디그리 : 사회 수요에 기반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신설22.12.02)

제34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삭제18.02.09)

제35조(전과) ① 전과는 매 학기 말에 허가하며, 전입인원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전출·입학 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개정15.02.06)(개정18.02.09)

② 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8.02.09)

제36조(전과 승인) ① (삭제18.02.09)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과는 동일 대학원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의 2(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6.08.05)

② 삭제(개정16.08.05)

제8장 교과와 이수

제3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일립교육(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으로 구성된다. 이하 일립교육은 교양교육이라 표기 한다. (개정17.11.10)(개정22.01.07)(개정22.05.06)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17.11.10)

④ 교양 및 전공교육의 질 향상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2.01.07)

제38조(교과 이수단위 및 특별시험) ① 교과이수의 단위 및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부여한다. 단, 실습 등의 경우 교내실습은 1학점 2시수, 교외실습은 1학점 3시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1.03.)(개정24.06.07.)

2. 삭제(개정16.08.05)

3. 삭제(개정16.08.05)

4. 특별 시험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 출신의 신학전공자들은 성서 언어(헬라어, 히브리어)를 수강하지 않고도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위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당해 학기 학점 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3. 특별시험 합격 시 중급과정에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졸업) ① 본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18.11.30)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삭제)(개정22.05.06)
3. 총평점평균이 1.5 이상인 자
4. 소정학기 등록을 필한 자
5. 소정의 교양과목,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6.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② (삭제)(개정22.05.06)

③ 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40조, 제43조의 요건을 충족한자로 세부 사항은 대학원규정에 따른다.(개정06.12.5)(개정15.02.06)(개정19.01.11)(개정 2023.02.03)

1. 삭제(06.12.5)
2. 삭제(06.12.5)

제40조(졸업자격시험) ① 졸업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시험은 모든 학년 1,2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에서 제외된다.(개정05.11.2)(개정19.01.11)
2. 졸업시험은 성경, 컴퓨터, 영어로 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 ② 본 대학원의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개정15.02.06)

제41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정한다.

제41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학기 중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및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온라인수업 및 집중수업 등으로 수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20.01.03.)

제4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최대 1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과목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직전학기 성적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학생이거나 편입학 학생은 21학점까지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2011.08.05.)(개정17.04.07.)(개정17.06.09.)(개정20.01.03.)(개정21.11.05)(개정22.12.02)(개정23.03.03)

② 계절 수업의 수강신청은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단, 대학원장 허가 시 초과취득 가능)

1. 일반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2.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
3. 특수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개정09.7.8)
4.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개정24.01.05)

제43조(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 수료를 인정하고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18.11.30)

② 본 대학원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06.12.5)(개정16.03.01)

1. 일반대학원 : 석사(M.A, Th.M)과정 27학점, 석사(M.SN)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이상 (개정16.03.01)(개정19.01.11)
2. 석제 (개정 07.09.14)(개정16.03.01)(개정19.01.11)
3. 신학대학원 : 석사과정 90학점 이상(개정 2010.04.12)(개정16.03.01)(개정 22.01.07)
4.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과정 30학점 이상(개정 2010.04.12)(개정16.03.01)(개정 22.01.07)
5. 교육대학원 : 석사과정 38학점이상(개정16.03.01)(개정 22.01.07)(개정24.01.05)

제44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학교 에서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19.01.11)(개정21.04.19)

② 전·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 후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현장실습과정(인턴십)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05.11.2)

④ (삭제09.03.31)

⑤ 군 복무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09.03.31)

⑥ 신입학생으로 입학 전 본 대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된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신설19.01.11)

⑦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20.01.03.).

⑧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험 및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20.01.03.)(개정21.04.19)

⑨ 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09.03.31)(개정19.01.11)

제44조의2(석사과정 학점 취득) ① 학부 재학생이 7,8학기 말에 성적 우수자 혹은 필수이수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총장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에서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석사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개정 04.12.1,05.11.2)(개정15.02.06)

② 제1항의 석사과정 학점 취득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규정으로 정한다.(개정15.02.06)

제45조(학위)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1에 정한 학위(별지서식1)를 수여한다. (대학원은 별지서식2~5)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학사과정 : 학사학위
2.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③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명예박사학위)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

낸 자, 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기독교 및 본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 총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 ⑤ 삭제(개정15.02.06)
-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06.12.5)

제45조의2(부설 평생교육원 학위) (신설09.11.20)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6호] 제7조(학점인정 <개정 2007.12.21>)에 의하여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평생교육원 규정에 의하여 제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신설16.08.05)
- ③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에는 본 대학의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1.04.19)

제45조의3(학위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5.02.06)

- ② 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5.02.06)
- ③ 총장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46조(조기졸업) ① 신입으로 입학한 학생은 6, 7학기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개정21.04.19)

- ② 편입생이 입학 전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3학기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는 수업 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신설21.04.19)

제9장 시험과 성적

제47조(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는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한다.

제48조(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3주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등 급	평 점
A+	4.3
A	4.0
A-	3.7
B+	3.3
B	3.0
B-	2.7
C+	2.3
C	2.0
C-	1.7
D+	1.3
D	1.0
D-	0.7
F	0

※ 평점 평균은 총 성적 평점을 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본 대학원은 학점 관리상 편의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사용한다.

점수	등급	평점
100 - 98	A+	4.00
97 - 93	A	3.85
92 - 90	A-	3.50
89 - 87	B+	3.30
86 - 83	B	3.00
82 - 80	B-	2.70
79 - 77	C+	2.30
76 - 73	C	2.00
72 - 70	C-	1.70
70 -0	F	0.00

IC (Incomplete) 성적보류 (미완성)

* IC(Incomplete=미 완결): 과제물 기타 교수가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미 완결(IC)을 교학처에 학기말 성적으로 보고한다. IC 를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학기말 시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성적이 교학처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 F 로 자동 처리된다.

③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2014. 08. 01 신설)

제50조(재수강)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1.03)

1. 학수번호와 학점이 동일한 교과목

2.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유사교과목

② 전항의 유사교과목은 교학처장이 정한다.(개정20.01.03)

③ 편입생이수과목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1.03)

④ 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 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개정20.01.03)

⑤ 학점교류의 경우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개정 20.01.03)

제51조(성적미달 제적) 삭제(개정19.01.11)

제10장 학생활동

제52조(학생활동)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19.01.11)
2. 삭제(개정19.01.11)
3.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4. 학생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아리 등 학생단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단체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19.01.11)

제53조(학생지도) ①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학사 및 연구와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 ③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19.01.11)

제54조(비성서적 행위의 금지) ① 학생은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 혹은 이와 유사한 온갖 종류의 음란한 행위, 경건치 않은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19.01.11)

- ② ①항의 내용을 주장하는 시위나, 활동, 동조자 규합, 동아리 구성, 이를 주장하는 외부 세력과의 연대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어떤 행위가 위 ①②③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쟁은 1차로 신학위원회가 심의, 판단하며 이를 교무위원회에 다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개정19.03.08)

제55조(간행물) 학생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징계) 삭제(개정19.01.11)

제57조(재입학, 편·입학 불허) 삭제(개정19.01.11)

제58조(세부사항)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기본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15.02.06)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59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서는 포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제60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19.01.11)

1. 기독교 정신에 위반되며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삭제(개정19.01.11)
3. 삭제(개정19.01.11)
4. 기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한다.
 -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19.01.11)

제12장 납입금

제61조(납입금)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수업료 및 실험실습비 등 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63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 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에 의하거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반환한다.

제64조(납입금 공시) 총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64조의2(장애 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04.12.1)

② 학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15.02.06)

제13장 장학금

제65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장학금 지급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6조(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자진퇴학, 제적 또는 징계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15.02.06)

제14장 직 제

제67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5장 교수회

- 제68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교원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편·재입학 포함),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0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71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실)장으로 조직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제72조(의장)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장 대학원 위원회

제72조의2(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7인으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2003.2.1).

제72조의3(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04.12.1) (개정 17.12.18)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2조의4조(회의) ① 대학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한국성서대학교의 총장 또는 교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장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 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 대학원장은 이를 소집한다.(개정15.02.06)
 ③ 대학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장 특별학생(삭제04.12.1)

제73조(특별학생) ① (삭제04.12.1)

② (삭제04.12.1)

제74조 (삭제04.12.1)

제1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75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의2(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2.06)

②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의3(연구과정) ① 본 대학원 강의에 청강 또는 연구과정생으로 수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년 이내 과정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규정에 따른다.(개정04.12.1)(개정15.02.06)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6)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장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제76조(부속·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개정19.01.11)(개정22.02.11)

1. 부속기관: 도서관, 출판부, 보건실(개정06.6.20)(개정19.01.11)(개정22.02.11)

2. 부설연구기관: 일립교육연구소, 일립신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영유아보육연구소, 인터넷신기술연구소(개정05.11.2)(개정19.01.11)(개정22.02.11)

3.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센터, KBU인재개발원, KBU원격평생교육원, 대학어린이집, (개정09.11.20)(개정19.01.11)(개정19.05.27)(개정22.02.11)

②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19.01.11)(개정19.05.27)

- 제76조의2(산학협력단)** ① 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04.6.2)
-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칙 개정

- 제77조(학칙 개정)** 본 대학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개정04.12.1) (개정17.11.10)

제22장 계약학과(신설06.1.4)(삭제16.2.6)(개정17.11.10)

- 제78조 (계약학과)**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17.11.10)
-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17.11.10)

제23장 자체평가(신설09.05.01)

- 제86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2011. 01. 01)

- 제8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2 제4조의3에 따라 본 대학교의 등록금책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15.02.06)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15.02.06)

제88조 삭제

- 제89조(심의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 등)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15.02.06)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임규정)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3조 (학칙개정) 본 학칙개정은 교무회의 결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야간 정보과학부 휴학생을 고려하여 2007년 2월까지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야간에 개설할 수 있다. 야간 정보과학부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 재입학 정원 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학칙 시행 전에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편입생 포함) 종전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49조 ③항은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칙 제36조, 제50조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4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① 선교학전공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서학과 재입학 정원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야간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 재입학 정원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복수학위전공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43조 2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3조 2항은 대학원 2022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37조, 제39조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2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보육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으로의 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24학년도 입학자 중 1차 입시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요건을 갖춘자는 4학기제로 졸업이 가능하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전공이수)의 이중전공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하며 기존 이수 중인 학생은 복수전공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1)(개정19.01.11)

제○○○○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함

제1전공 : ○○○○학과 ○○○○전공

학위명 : ○학사

복수전공 : ○○○○학과 ○○○○전공

학위명 : ○학사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번호 : 성서대○○○○ 학○○○○

별지서식(2)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학위번호 : 대원 ○

별지서식(3)

석 제○○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전공)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석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성서대 ○○○○석 ○○○

별지서식 (4)

박 제○○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 박사(○○전공)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성서대 ○○○○박 ○○○

별지서식 (5)

명박 제○○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 추천에 의하여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성서대 ○○○○명박 ○○○

별지서식 (6)

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1년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